

## 『2015년 소공인기술개발』 주관기관 모집 공고

중소기업청·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공인의 신기술 개발, 제품·공정 개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『2015년 소공인기술개발』 주관기관 모집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15년 3월 6일

중소기업청장

### 1. 사업개요

#### 사업목적

- 소공인 전용 R&D사업을 마련하여, 기술·제품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, 과제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향상

\* 소공인 :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

#### 사업기간 : '15. 2 ~ 12월

\* 과제개발기간 : 협약체결일 ~ '15. 12. 31일 이내

#### 지원규모 : '15년 63억원

#### 지원대상 : 소공인 (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)

#### 신청과제 : 소공인이 제안한 일반과제(자유응모형 단기과제)

□ 지원분야(택일) : ① 신기술 개발 분야, ② 제품·공정개선 분야

\* 제품개선 : 기존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해 매출액 신장, 시장점유율을 제고

\*\* 공정개선 : 생산시간, 절차, 비용 등의 절감(기존 ①→②→③, 개선 ①→③)

□ 지원금액 : 과제당 50백만원 한도, 총 개발비의 75% 이내 보조

\*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25% 이상(현금 또는 현물)

\*\* 과제내용, 기간 등을 고려하여 100개 과제 내외 선정·지원

□ 지원내용 : 소공인 특성을 고려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지원

○ 1 단계 : 기술(혁신)진단 지원(350개 과제 내외)

- 진단전문가가 현장방문을 통해 소공인의 기술혁신 수준 및 신청 과제 지원 필요성 등 기술진단을 전액 무료로 지원(최대 2MD)

\* 사전진단(1MD)과 기술진단(1MD)으로 구분(불 필요시 사전진단만 수행)

○ 2 단계 : 사업계획서 수립 지원(최대 200개 과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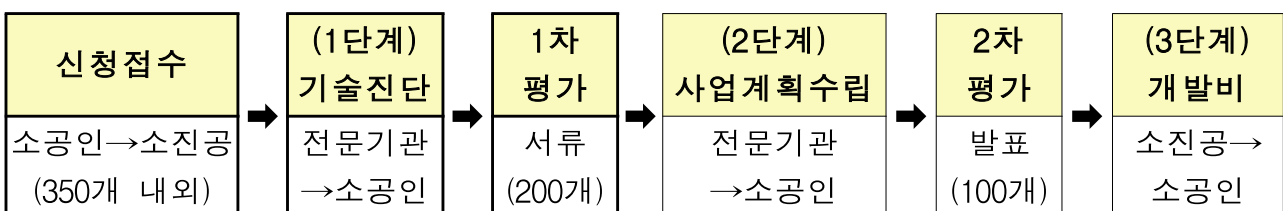
- 서면평가를 통과한 우수한 과제를 전문가가 방문, 상담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수립을 지원, 소공인의 행정 부담을 경감(10MD)

○ 3 단계 : 과제개발비(R&D) 지원(100개 과제 내외)

- 발표평가를 통과한 최종 소공인 지원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과제개발비\*의 75% 이내 지원

\* 지원항목 : ① 인건비, ② 연구장비·재료비, ③ 위탁개발비, ④ 기술자문비

□ 추진절차



## 2.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

- 신청자격 : ‘주관기관 단독’ 또는 ‘협력기관과 공동’ 개발 가능(택일)
  - (주관기관) 아래의 신청요건(①~④)을 모두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

### <주관기관 자격요건 >

요건		세 부 내 용
1	상시근로자	○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
2	업 종	○ 「통계법」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‘제조업’을 영위
3	자부담비용	○ 자부담비용을 총 사업비의 25% 이상 제시(현금 또는 현물) * 총사업비(100%) = 정부지원금 75% + 민간부담금 25%
4	정부사업 참여	○ 신청일 기준으로 정부·지자체의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중인 사업자는 신청불가 (선정 후 적발 시 협약취소)

- (협력기관)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, 대학 또는 위탁연구기관 (대기업, 협동조합, 지자체는 참여 불가)

### □ 지원내용

- 정부보조금 : 총 사업비의 75% 이내(최대 50백만원 한도)
- 민간부담금 : 총 사업비의 25% 이상 부담(현물 또는 현금)

### □ 지원조건

- 개발기간 6개월 내외(~'15.12월)로, 5천만원 한도 내 차등 지원
  - \* (항목) ① 인건비, ② 연구장비·재료비, ③ 위탁개발비, ④ 기술자문비
- 별도 기술료는 없음
-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

◆ 지원제외 사항

- ① 주관기관 자격 및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② 주관기관이 신청일 기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,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
- ③ 접수 마감일 현재 「기업의 부도, 휴·폐업」 중이거나,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
### 3. 선정절차

□ (1단계 : 서류평가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서류(서면)평가 실시

\* 신청과제 중에서 최대 200개까지 1차 선정하여 사업계획서 수립을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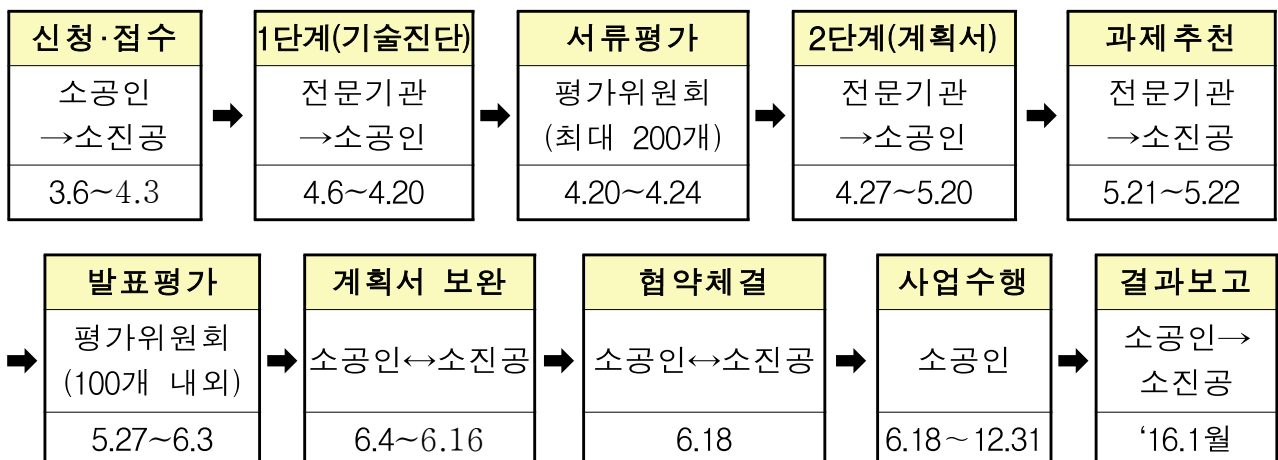
\*\* 평가항목(안) : 과제개발 필요성, 과제개발내용의 적절성 등

□ (2단계 : 발표평가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발표평가하여 최종 100개 내외를 선정

\* 발표자료는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활용

\*\* 평가항목(안) : 추진의지, 보유기술 고도화 가능성, 부차가치 창출 가능성 등

< 세부추진절차 및 일정(안) >



## 4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 : '15년 3월 6일(금) ~ 4월 3일(금), 18:00까지

※ 주의사항 :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 목표(최대 350개 과제)를 달성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중이라도 조기마감 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 : 등기우편 및 방문신청(마감일 18:00시 도착분에 한함)

□ 신청서류 : ① 사업신청서 1부, ② 자가진단표 1부

□ 접수처 :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, 대림빌딩 3층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(우301-722)

## 5.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
- 신청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으나, 최종 선정된 업체는 추가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음

## 6. 문의처

- 문의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(042-363-7915, 7917)
- 홈페이지 : 중소기업청(<http://www.smba.go.kr>)  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<http://www.semas.or.kr>)

< 첨부 > 1. 지원대상 업종      2. 사업신청서      3. 자가진단표

## 소공인 기술개발 지원대상 업종

구 분	해당 업종(중분류,24개)	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
제조업 (대분류)	식료품 제조업	10
	음료 제조업	11
	담배 제조업	12
	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제외	13
	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14
	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15
	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 가구 제외	16
	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17
	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18
	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19
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	20
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21
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22
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23
	1차 금속 제조업	24
	금속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	25
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26
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27
	전기장비 제조업	28
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29
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30
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31
	가구 제조업	32
	기타 제품 제조업	33



## 『2015년도 소공인 기술개발 지원사업』 주관기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

◆ 주관기관 지원자격 체크리스트에서 1개 이상 해당될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

	내 용	검토 결과	
1	<p>○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여부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확인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지 여부를 검토</p> <p>* 상시근로자 : ‘14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((2014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)/12)</p> <p>*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,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 처리</p>	적	부
2	<p>○ 소공인 지원대상업종 여부 제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</p> <p>* 확인근거(증빙서류) : 사업자등록증 등</p> <p>* 주된 업종의 판단은 하나의 기업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함</p>	적	부
3	<p>○ 참여제한 여부 현재 정부 또는 지자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(참여중이면 ‘부’, 미참여 시에는 ‘적’)</p>	적	부
4	<p>○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여부</p>	적	부
5	<p>○ 국세·지방세 체납 여부</p>	적	부
6	<p>○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여부 (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제외)</p>	적	부